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24
----------	-----

제출연월일 : 2008년 5월 일
제출자 : 중구청장

1. 개정이유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질서 확립 및 배정률 제고를 위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부정주차요금 부과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고유 가시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경형자동차의 주차장 이용요금 경감률을 확대 조정하여 경형자동차의 보급을 증대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지정 받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하여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000원의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2제3항)
- 나. 경형자동차의 주차요금 경감률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여 경형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함(안 제6조제4항제2호)

3. 근거법령

- 가.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제한 등), 제9조(노상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나.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2008. 3. 31 ~ 4. 19)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주차단위 구획당 월 10,000원으로 하고, 운영시간은 19:00~24:00까지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시간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지정 받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할 경우 이동 조치하여야 하며 만약, 이동하지 못할 경우에는 20,000원의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부정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제2조제16호”를 “제2조제20호”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의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또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는 1시간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50페센트를 경감한다.

제6조제4항제2호 중 “50페센트”를 “60페센트”로 한다.

제6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케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50페센트를 경감한다.

제14조제4항제3호 중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7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2(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운영)</p> <p>①(생략)</p> <p>②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주차요금 및 운영 시간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7과 같이 한다.</p> <p><신설></p>	<p>제5조의2(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운영)</p> <p>①(현행과 같음)</p> <p>②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주차단위구획당월 10,000원으로 하고, 운영시간은 19:00~24:00까지로 한다.</p> <p>③제2항에 의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시간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지정 받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할 경우 이동 조치하여야 하며 만약, 이동하지 못할 경우에는 20,000원의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④제3항에 의한 부정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p> <p>⑤(현행과 같음)</p>
<p>제6조(주차요금 등) ①~②(생략)</p> <p>③생략</p> <p>1.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p> <p>④생략</p> <p>1.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내지 6급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7급의 상이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케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안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50페센트를 경감한다.</p>	<p>제6조(주차요금 등) ①~②(현행과 같음)</p> <p>③현행과 같음</p> <p>1. -----제2조제20호-----</p> <p>-----</p> <p>④현행과 같음</p> <p>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의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또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의한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p>

현 행	개 정 안
	<p>차량표지를 부착한 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50페센트를 경감한다.</p>
<p>2.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페센트를 경감한다.</p> <p>3.(생략)</p> <p>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 표지를 부착한 자 또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는 1시간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50페센트를 경감한다.</p>	<p>2. -----</p> <p>-----</p> <p>-----</p> <p>60페센트-----.</p> <p>3.(현행과 같음).</p> <p>4.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부터 6급 까지의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케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 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50 페센트를 경감한다.</p>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납부등) ①~③(생략) ④생략 1.~2.(생략)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5항 제2호에서 또한 같다.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납부등) ①~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 ----- ----- -----.

현 행	개 정 안												
<p>【별표7】</p> <p>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주차요금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주 간</th><th>야 간</th><th>전 일</th></tr> </thead> <tbody> <tr> <td>주차요금 (1구획당)</td><td>10,000원/월</td><td>10,000원/월</td><td>10,000원/월</td></tr> <tr> <td>주차시간</td><td>09:00~18:00</td><td>19:00~24:00</td><td>00:00~24:00</td></tr> </tbody> </table> <p>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시범실시 기간에 는 야간만 적용한다.</p>	구 분	주 간	야 간	전 일	주차요금 (1구획당)	10,000원/월	10,000원/월	10,000원/월	주차시간	09:00~18:00	19:00~24:00	00:00~24:00	<p><삭제></p>
구 분	주 간	야 간	전 일										
주차요금 (1구획당)	10,000원/월	10,000원/월	10,000원/월										
주차시간	09:00~18:00	19:00~24:00	00:00~24:00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624)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5. 7(수)
- 나. 제출자 :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 : 2008. 5. 8(목)
- 라. 위원회 상정 : 2008. 5. 16(금)

3.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도시국장)

가. 제안이유

-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 배정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질서 확립 및 배정률 제고를 위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부정주차요금 부과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경형자동차의 주차장 이용요금 경감률을 확대 조정하여 경형자동차의 보급을 증대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지정 받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하여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000원의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5조의2 제3항)

- 경형자동차의 주차요금 경감률을 50페센트에서 60페센트로 상향 조정하여 경형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함(안 제6조 제4항 제2호)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강종진)

-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거주자우선 주차 제 주차구획 배정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주차 차량 중 견인이 불가한 차량에 대하여 견인료에 상응하는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이미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고
-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경형자동차 주차장 이용요금 경감률 확대 조정은 2006년 11월 건설교통부에서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경감률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 협조요청이 이미 있었으며 울산광역시에서도 2007년 1월 1일 이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
- 본 조례안은 지난해 2월 26일 제98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되었으나 본 회의에서 ①부정주차 했을 때의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②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 ③부정주차 단속을 해야 한다고 하는 구민들의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절실히 필요, ④2007. 3. 1 전면 시행되는 단계부터 부정주차제에 대한 강제적 요금을 부과하는 입법은 주민들의 갈등과 여러 가지 저항이 예상될 것이라는 사유로 부결된 안건임
-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전국 50여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고 부정주차요금의 부과 또한 울산남구를 비롯하여 자치단체에서 시행이 확대되는 분위기이며 지난해 부결당시의 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판단됨.

5. 근거법규

-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제한 등), 제9조(노상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6. 심사결과 : 수정 가결

수정가결사항

개정안	수정안
<p>제5조의2(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운영) ①(생략) ②(생략) ③제2항에 의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시간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지정 받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할 경우 <u>이동 조치 하여야 하며 만약, 이동하지 못할 경우에는 20,000원의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u> ④(생략) ⑤(생략)</p>	<p>제5조의2(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 · 운영) ①(개정안과 같음) ②(개정안과 같음) ③제2항에 의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시간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지정 받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할 경우 <u>이동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만약, 이동하지 못할 경우에는 10,000원의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u> ④(개정안과 같음) ⑤(개정안과 같음)</p>